공고번호 : 2025 - 26호

『소공인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 소공인 모집 공고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제품의 품질 향상과 설비 가동률 제고를 위해 「소공인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설비 노후화와 부품 교체 지연 등으로 인한 생산 능력 저하와 작업자 안전 확보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 생산 환경 조성

○ 안경 제조 소공인이 보유한 설비의 생산 능력 증진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생산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9. 30.

□ 지원내용(※ 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지원한도	세부내용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비 지원	500만원	· 소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기존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 가능 ※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하드웨어만 가능

※ 신청내용으로 진흥원 타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적발 시 환수조치

※ 참여업체 선정 시 전년도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 미참여 소공인 우선 선발

※ 지원금액은 1개사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구매 조건부 제품화 지원사업, 소공인 공동관 선정 소공인의 경우 최대 700만원 수혜 가능

※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예시) 00 부품 교체(×) → 00설비의 00부품 교체(○)

※ 기존 제조설비에 없던 부분 신규 추가 및 업그레이드 불가, 기존 부품 단종 시 대체 부품으로 교체 가능

※ 자부담 금액을 추가하여 부품 교체 및 수리 가능

□ 지원규모 : 8개사 / 1개사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소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지원방법 : 소공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원금 지급 (초과금액 및 부가세 자부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대구시 북구 노원동, 침산동* 소재 안경 제조 소공인*

1) 본사 소재지 기준

2) (규모) '24년 연 매출액 80억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3) (형태)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C27

4)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 ❺과세표준명세 : 제조업, 332000 또는 332002

※ 제조업(332000 또는 332002) 외에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24년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

❺ 과 세 표 준 명 세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8)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332000	
(29)					
(30)					
(31)	수입금액 제외				
(32) 합 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북대구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 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등 패션 아이웨어 제품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자율사업 500만원 이상 수혜 불가

※ 구매 조건부 제품화 지원사업, 소공인 공동관 선정 소공인의 경우 최대 700만원 수혜 가능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원사업과 동일 건 지원 불가(중복성 검토)

○ 진흥원 운영시설(아이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시,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공인 사업장을 동시 보유한 대표자의 사업장은 참여 제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사유>

① 휴·폐업중인 소공인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소공인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진일정 및 추진절차

모집공고	▶	사전 실태조사 (전문가 동행)	▶	선정평가	▶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5. 21. ~ 6. 10.		6. 11. ~		사전 실태조사 이후		선정평가 이후		협약 체결 이후		~ 9. 30.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수행 유의사항 : 수리업체가 소공인 사업장으로 방문 할 경우 센터에서 참관 예정(센터로 연락 필수), 수리업체로 제조설비를 보낼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 과정 사진 제출 필수

□ 기업평가 및 선정 : 100% 서면평가 / 비대면 평가

○ 사전 실태조사(전문가 동행)를 통한 지원 적합 여부 판단 후 평가위원회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최종 참여 소공인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종합점수 최고 점수 획득자 순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소공인 우선 선정
- 최종 선정된 소공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미선정된 후순위 소공인 참여 가능

2 사업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21.(수) ~ 6. 1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1) 소상공인24 사업자 회원가입(첨부된 매뉴얼 참고자료 1 확인)

2) 소상공인24를 통해 개별 신청 절차 진행(첨부된 매뉴얼 참고자료 2 확인)

※ 신청 후 사업 담당자 유선(053-350-7861) 연락 필수

3) 담당자 서류 검토 및 보완 후 신청 접수

※ 서류 접수 마감일에는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후 신청 철회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신청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로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간소화를 위해 소상공인24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 : 동의 시 ⑦~⑩번 서류 자동 제출

※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하거나 상황에 따라 서류 미(오)제출되는 경우 추후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서류 내 붙임서류	비 고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서식)	별첨1 양식 활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첨2 양식 활용
	③ 기업현황표	별첨3 양식 활용
	④ 서약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별첨4 양식 활용
	⑤ '24년 부가세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⑥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거래처 직인 필수
	⑦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필수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⑨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1인 사업장)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그외 사업장)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선택 서류	⑪ '24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4년 수출실적증명서 추가 제출 시 선정평가에 반영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별도 제출 필요
- 공동대표자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납세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3 기타사항

□ 가점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최초 신청 소공인 : 가점 6점

○ 센터 지원사업 수혜 소공인 중 '24년 지원사업 미참여 소공인 : 가점 4점

○ '24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교육 수료 : 가점 2점

□ 유의사항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타 제재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 사업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소공인에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참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

○ 서류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부적격 처리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재신청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신청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사전 연락 필수

○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후 반드시 유선(053-350-7861) 연락·제출 확인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추가, 축소)하여 진행할 경우 정산 불가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공인 사업장을 동시 보유한 대표자의 사업장은 참여 제한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장 보유 시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운영시설(아이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시,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 부 서 명 :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담 당 자 : 이은지 매니저

○ 전화번호 : 053-350-7861

○ 이 메 일 : lej@koia.or.kr

□ 소상공인24 시스템 관련 문의처

○ 전화번호 : 1644-5302